
국제전기통신규칙(IRT) 개정 주요 의제

2012.9

방송통신위원회

[목 록]

의 제
I. 과금(charging) 및 정산(accounting) 관련 규정
II. 국제통신서비스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방지
III. 국제(모바일) 로밍(International(Mobile) roaming)
IV. 통신번호 오용(Number Misuse) 방지
V. 발신자 번호표시 (Calling Party Number Delivery)
VI.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포함)
VII. 국제 인터넷 트래픽 관리
VIII. ITR의 규제범위 (공인 운용기관 vs. 운용기관)
IX. ITR에서 참조하는 ITU-T 권고의 속성

1. 개념 및 현황

□ 개념

- 과금이란 '통신 거리, 통신 시간, 통신 속도, 서비스 종별 등에 따라 소비자가 이용한 역무의 요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
- 정산(국제전화)이란 '소비자가 사용한 국제전화의 해당 착발신 통신사업자 간 상호협정에 의해 결정한 협정요율 및 정산요율에 따라 착발신량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차액을 지불하는 것'

□ 현황

- 현 ITR은 개별 국가의 주관청(공인운용기관 포함)에게 국제전화 과금 및 정산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산의 원칙과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

2. 논의 배경

- 통신시장이 민영화되지 않은 일부 개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전화의 과금 및 정산은 개별 통신사업자 간의 개별 협정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동 ITR의 관련 규정이 사문화

3. 논의 내용

- 개도국은 개별 통신사업자 간의 협정 시 투명하고 균형적인 요금 책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 제안
- 선진국은 대다수 국가의 통신시장이 민영화 되어 국제전화의 과금 및 정산이 통신사업자 간의 개별 협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최소화 제안

1. 개념 및 현황

- 국제통신서비스의 이중과세란 하나의 통화에 대해 발수신 두 국가 모두에서 이중적으로 세금이 부과됨을 의미
- 현 ITR은 국내법에 따라 국제 전기 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 특정상황을 위한 다른 협정이 없는 한 동 세금은 통상적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 국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징수” 되어야한다고 규정

2. 논의 배경

- 아프리카, 남미, APT는 현 ITR 관련 규정이 근래에 생긴 다양한 국제통신서비스(로밍서비스 등)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제안

* 국내 이용자가 해외 국가에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내 통신사업자가 해외 통신사업자에게 정산하여 지불하는 망사용대가에 해외 국가의 세금이 포함되는 등의 이중과제를 용인하도록 해석될 수 있음

3. 논의 내용

- 개도국은 이중과세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문화 하고 모호한 표현에 대한 삭제
- 선진국은 동 규정은 요금 및 회계 분야와 관련된 세부 규칙이므로 ITR 규정에서 삭제 또는 현 조문상으로 큰 문제가 없으므로 조문 유지

III 국제(모바일) 로밍(International(Mobile) roaming)

1. 개념 및 현황

- 국제로밍이란 한 국가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타 국가로 여행 시 그 나라의 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국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 간 국제로밍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
- ITR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일반화되지 않은 1988년에 제정되어 유선 중심의 국제통신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음

2. 논의 배경

- 유럽과 남미 국가는 현 ITR 규정이 유선 중심의 국제통신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동전화 국제로밍 관련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
 - 특히, 이동전화 국제로밍에 대한 요금의 투명성 및 요금정보의 가용성 확보 등을 제안
 - 또한, 최근 스마트폰 도입에 따른 데이터로밍이 일반화됨에 따라 예기치 않은 높은 통신요금(빌쇼크) 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 추가를 제안

3. 논의 내용

- 유럽 및 남미 국가는 로밍요금의 투명성, 국경 인접국가의 로밍요금 발생 방지 사전 조정, 이용자의 요금정보 실시간 접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등을 명문화 하는 것을 제안
- 일부 국가에서는 ITR이 특정 서비스를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 추가에 반대 또는 세부적 규제 내용이 아닌 정책적 원칙을 포함한 신규 조항 제안

IV

통신번호 오용(Number Misuse) 방지

1. 개념 및 현황

□ 개념

- 번호 오용이란 각 국가에 할당된 번호자원이 해당 국가의 통신사업자가 아닌 타국의 통신사업자에 의해 사용되거나, 또는 할당된 목적에 맞지 않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

□ 현황

- 일부 외국의 통신사업자는 타국에 할당된 번호 등을 활용하여 제3국의 소비자가 해당번호로 전화를 하게하고 중간에서 호를 가로챈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 빈번

※ 일반적으로 착신요금이 비싼 개도국의 번호 오용 사례가 다수 발생

- 과거 일부 개도국의 주관청 및 통신사업자가 자국의 통신수입 증대를 위해 자국의 번호를 대여하고 이익을 챙기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중간에서 호를 가로채어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개도국의 수입 감소

2. 논의 배경

- 태평양 지역 국가를 포함한 개도국들은 국가번호를 포함한 해당 국가의 번호자원을 타국의 통신사업자가 도용함으로써
 - 자국 통신사업자의 재정적 손실, 국가이미지 추락 및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

- 아울러, 번호자원이 할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련 ITU-T 권고*를 의무화하는 신규 조항을 제안

* E.164(국제공중전기통신 번호계획) 및 E.156(E.164 번호자원 오용에 대한 ITU-T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3. 논의 내용

- o 개도국은 재정상의 손실, 사기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번호 오용과 관련한 규제를 ITR에 포함해야 함을 주장
- o 아태지역 등 일부국가에서는 번호오용 방지를 위한 회원국의 역할을 선언적으로 포함할 것을 주장
- o 선진국은 동 이슈는 개별 국가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국제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

V

발신자 번호표시(Calling Party Number Delivery)

1. 개념 및 현황

□ 개념

- 발신자번호란 전화교환기 간의 하나의 파라미터로서 ITU-T E.164에서 정의한 국제전화번호
 - 국가번호(Country Code), 식별번호(National Destination Code), 가입자 번호(Subscriber Number)와 같은 정보를 전화망을 통해 전달하는 것

□ 현황

- 발신자번호는 VoIP 사업자 등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등장으로 인한 상호운영성 문제, 교환기 자체의 한계 또는 해당 서비스의 제한 등의 이유로 전달이 안되기도 하며,
 -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경과선로를 통과하면서 삭제되는 경우도 있음

2. 논의배경

- 아랍, 아프리카, 러시아 국가들은 발신자 번호 미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과금·정산 상의 손실 및 소비자 권리 침해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 원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신자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는 신규 조항을 제안

3. 논의 내용

- 개도국은 통신사업자의 재정적 이익, 신규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등에 따라 발신자번호 전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신자 번호 표기 의무화 관련 조항 신설
- 선진국은 발신자번호 표기는 인터넷전화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ITR 포함에 반대
- 아태지역 및 일부 국가에서는 회원국의 역할에 대해 선언적인 조문 신설 지지

VI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포함)

1. 개념 및 현황

-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란 통신망, 통신인프라 및 통신서비스·콘텐츠 등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 ITU-T SG17은 통신시스템 보안, 사이버 보안, 스팸, 네트워크 보안 관련 다수의 권고를 개발 완료 및 개발 중

2. 논의 배경

- 중국은 글로벌통신서비스의 이용과 확산을 위해 통신시스템 보호와 오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만들고자 네트워크 및 개인 정보보호 관련 신규 조항 제안

3. 논의 내용

- 개도국은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보호, 스팸대응, 사이버 보안 등 모든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조문 신설
- 선진국은 보안 관련 사항의 대부분이 개별 회원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며 구체적인 보안 이슈를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한 입장
- 아태지역 및 일부 국가에서 네트워크 보안에 국한한 조문 신설

VII 국제 인터넷 트래픽 관리

1. 개념 및 현황

- 현 ITR은 인터넷(또는 IP네트워크)이 상용화되지 않은 1988년에 제정된 국제조약으로 유선 중심의 국제통신서비스를 규제
- 인터넷서비스는 통상 국가 및 국내 사업자 간 IP망의 상호접속에 의해 이뤄지며, IP망 상호접속에 따른 정산은 망의 규모가 유사한 경우 무정산(동등접속, Peering), 망의 규모가 다른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큰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방식(중계접속, Transit)임
- 국가간 IP 접속에도 상기 접속방식이 적용되며, A국이 B국과 IP 접속을 하는 경우 A국이 B국에 대가를 지불(Transit)하는 방식임

2. 논의 배경

-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는 인터넷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글로벌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ITR 내 인터넷 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
- 트래픽 전송에 대한 공정한 보상 및 급속한 인터넷트래픽 성장에 기인한 투자로 연결될 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해 ‘발신망 사업자의 대가부담원칙(Principle of sending party network pays)’ 관련 신규 조항 제안

※ ETNO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Network Operators' Association

3. 논의 내용

- 일부 국가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제는 ITR의 지향점과 불일치하고, 자국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조문화에 반대

VIII ITR 규제의 범위

1. 개념 및 현황

- ITR 규제의 범위란 국제조약으로서 ITR의 규제 영향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
- 현 ITR은 주관청(Administration) 또는 공인운용기관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통신시장의 자유화·민영화 이후 최근에는 일부 개도국만이 국가 또는 국영 통신 기업이 통신서비스를 제공

2. 논의 배경

- 유럽, 아랍, 아프리카 등은 ITR이 국제조약으로 조약 당사자인 회원국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ITR 규정 내 주관청(Administration)을 회원국(Member State)으로 수정 제안
 - 또한, 유럽을 포함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통신사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체제로서, ITR의 규제대상으로서의 공인운용기관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ITR 규제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 제기
- 규제대상을 회원국(Member State)만으로 할 것인지, 기존의 공인운용기관(ROA)* 또는 운용기관(OA)**까지 포함할 것인지 논의 필요

* Recognized Operating Agency : 정부에 의해 허가된 통신사업자

** Operating Agency : 신고제를 통해 운용하는 통신사업자

3. 논의 내용

- 개도국 및 아태지역은 일괄변경이 아닌 조항이 의도하는 목적에 맞게 주관청(Administration)을 회원국(Member State) 또는 운용기관(OA)으로 변경 제안
- 일부 국가에서는 주관청(Administration)을 조항이 의도하는 목적에 맞게 회원국(Member State)으로 변경하는 것은 찬성하나 운용기관(OA)이 아닌 공인운용기관(ROA)로 사용하자는 입장

1. 개념 및 현황

□ 개념

- ITU 권고(Recommendation)는 통신망을 운영하고 상호연동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및 통신망 상호연결을 위해 준수할 필요가 있지만 비구속적인 임의 표준임

□ 현황

- ITU 권고(Recommendation)는 개별 회원국 등의 자발적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ITR은 ITR에서 참조하는 ITU 권고에 ITR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ITR 이행에 있어 관련되는 ITU 권고를 '최대한 준수'토록 명시

※ 전파규칙(RR, Radio Regulation)은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요구하는 특정 전파규칙 조항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특정 ITU-R 권고를 참조함으로써 해당 권고를 의무화

2. 논의 배경

-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ITR 이행에 필수적인 ITU 권고를 ITR 내에 참조 또는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ITU 권고를 강제화하는 방안 제시

3. 논의 내용

- 개도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무선분야의 전파규칙과 유사하게 특정 ITU 권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강제화 방안 신설 주장
- 선진국 및 아태지역은 ITU의 권고는 회원국의 자발적 선택과 관련된 사항으로 권고 의무화 반대